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4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5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6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7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4. 5.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4.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거창군 계획조례에 발전시설의 대상을 확대해 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규정을 둬으로써,
- 사업 시행 측과 행복추구권을 바라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함.

3. 주요내용

- 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로만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조제목을 ‘발전시설’로 개정함(안 제20조의3)
- 나. 풍력발전시설과 154kV 이상 송전선로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23 4항)
- 다. 이격거리 규정의 기준이 되는 시설의 정의를 정함(안 별표23 비고 5항 및 6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03. 08. ~ 03. 12.
 -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 【붙임】 참조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송전선로에 대한 이격거리를 정한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풍력발전 시설 소음발생 등의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풍력에너지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풍력발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발전업계 및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인들의 이격거리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번에 신설된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주민 의견청취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단서 조항으로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입법예고시 이격거리에 많은 주민 의견이 있었고 심의 과정에서도 이격 거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반영 결과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반영하여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당초 1,500m에서 2,000m로, 5호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로부터 당초 1,000m에서 1,500m로 이격거리를 확대하였으며 단서 조항으로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음.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4. 5.

나. 발 의 자 :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신재화,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4.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신재화 의원)

-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화했으며, 청소년들이 그린썩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나. 공영자전거 그린씽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다. 그린씽의 기준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 2)
- 라. 그린씽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 3)
- 마. 그린씽의 무료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 4)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03. 26. ~ 04. 0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 재기재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그린甁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4. 5.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4.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 이 조례는 거창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4에이치육성’에서 ‘4에이치활동’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마. 지원 사업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농업축산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03. 27 ~ 04. 0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4에이치활동의 방향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4. 5.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4.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유형이 7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유형 확대(안 제3조)
- 1) 현행 :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 2) 신설 :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 나.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 신설함(안 제8조~제10조, 제12조)
-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정비(안 별표 1, 별표 2)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3. 5.~3. 2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유형이 7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 각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의를 명문화하고 각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경우,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바,
-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함으로써 위험지구 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지구 지정 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4. 5.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4.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구성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과 모험·체험을 위한 산림레포츠시설을 아우르는 거창 산림레포츠파크를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설 및 개관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용 신청 등을 정함(안 제4조)

- 라.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반환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별표 1~별표 3)
마.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 1,086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3. 22.~4. 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개장을 앞두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는 백두대간에 위치한만큼 산림속에서 레포츠를 즐기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창을 대표하는 시설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 거창 산림레포츠파크를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음료와 식사, 숙박, 주차 등 편의시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 이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비용추계 결과 1차연도에 10억 8,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는 등 운영관리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4. 5.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4.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 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형식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제3조)

나.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 신설함(안 제

5조)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삭제(현행 제5조제5호·제6호, 제6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함(현행 제18조, 별표)

1) 이유: 군수의 재량권 침해

2) 입법형식 변경: 규칙으로 부과기준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3. 5.~4. 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제4조 군수의 책무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를 추가함.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법 제21조(과태료)에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권자로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바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그 외 용어와 체계를 정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4. 5.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4.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정함(안 제2조·제11조의2·제11조의3)

1) 범위 확대 :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

2) 법령위임사항 신설 :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3) 위탁 근거 신설

나. 군 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선임방법을 확대함(안 제5조)

1) 군수가 위촉 ⇒ 위촉 또는 공개채용

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함(안 제10조)

1) 사후관리 계획 수립

2) 완료지역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
게 재정지원

마. 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함

1)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가)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 삭제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현행 제12조)

2) 법령·조례의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현행 제10조·제13조)

가)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 절차 등

나) 시행규칙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조·
제30조의2·제32조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0조·제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 5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3. 12.~4.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관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